

- 2013년도 제2회 -

용진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3년도 제2회 용진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28일

용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



1 선발예정인원

시험명	시험방법	구 분				선발예정 인 원	비고
		직렬	직류		직급		
총 계						18명	
제2회 임용시험 (10.19)	공개경쟁 임용시험	행 정	일반행정	일 반	9급	10명	
				장 애	9급	1명	
				저소득	9급	1명	
		사회복지	사회복지		9급	3명	
		해양수산	일반수산		9급	3명	

②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1. 시험과목

직렬	직류	직급	시 험 과 목
행정	일반 행정	9급	공통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
사회복지	사회 복지		공통(3)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: 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
해양수산	일반 수산		필수(5)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수산일반, 수산경영

※ **사회**는 법과 정치, 경제, 사회·문화, **과학**은 물리 I, 화학 I, 생명과학 I, 지구과학 I, **수학**은 수학(고교 1학년 과정), 수학 I,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.

※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하여 ***조정(표준)점수**를 적용합니다.

※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

2. 시험시간: 100분(10:00 ~ 11:40)

③ 시험방법

1. 제1차·제2차 시험(병합실시): 선택형 필기시험(매 과목당 20문제, 4지 1택형)

2. 제3차 시험: 면접시험

④ 응시자격

1. 응시결격사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(※ 기준일: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)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
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2.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

1.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-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③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-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⑤ 병역, 가정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2.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 -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-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-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-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
2. 응시연령: 18세 이상(1995.12.31 이전 출생자)

3. 거주지 제한

-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**웅진군**으로 되어 있거나 **(단,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)**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민에 한함)가 **웅진군**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**총 3년 이상인 사람.**

4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.
 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**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 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에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5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)이 **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.**
 -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보호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보호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보호대상자)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.
 -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군청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보호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6. 자격 및 학력제한

직급	직렬(직류)	자 격 증 및 학 력 (관 련 학 과)제 한
9급	사 회 복 지 (사 회 복 지)	사회복지사 3급 이상

-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(※기준일: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)

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 험 명	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	9.30 ~ 10.4 ※ 취소기간 : 9.30 ~ 10.6	필기시험	10.8	10.19	10.24
		면접시험	10.24	10.31	11.4

6 응시원서 접수

1. 원서 접수기간: 2013. 9.30(월) ~ 10. 4(금) 09:00~18:00 / 휴일제외

2. 원서 접 수 처: 웅진군청 6층 중회의실

3. 원서 접수방법: 방문접수(※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)

4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: 1통(※접수처 배부)

- 사진 2매(3.5cm×4.5cm)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(※원판보관)
- 응시수수료: 9급 5,000원 상당의 웅진군 수입증지
 - 단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(원서접수 시 증명서 제출).

○ 거주지 제한 확인서류

- 주민등록 등·초본: 각 1부(※초본-최근5년간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)

○ 자격증 사본: 각 1부(※원본지참 / 사본제출)

○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: 1부

○ 장애인증명서(원본지참/사본제출) 또는 진단서: 1부(※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)

○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: 1부(※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)

5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강화·옹진군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, 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(휴일 제외)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(*접수된 일체의 서류 반환 불가)
 -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원서접수 시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을 별첨2 「장애인 편의제공 내용」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응시자격(응시자격 결격사유, 응시연령, 거주지 제한, 장애인 구분모집, 저소득층 구분모집, 자격 및 학력제한)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

7 양성평등채용목표제

1. 대상시험: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

2. 채용목표: 30%

- 채용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,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,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버립니다.

3. 실시방법

-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합니다.(*하한성적: 합격선 -3)

8 가산특전

1.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		가산비율	적용방법
취업지원대상자 (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)		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10%	•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
자격증 소지자	공통적용 가 산 점	통신·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	과목별 만점의 0.5% ~ 1%	• 자격증 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(공통적용 가산점 1개, 직렬별 가산점 1개)
	직 렬 별 가 산 점	행정직분야 기술직분야	과목별 만점의 3% ~ 5%	

2.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
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.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

3.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

○ 공통적용 가산점

-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·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※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 분	임용계급	자 격 증	가산비율
통·신 정보 처리 분야	9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	1%
	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	0.5%
사·무 관·리 분야	9급	컴퓨터활용능력 1급	1%
		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%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.

○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

-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.

구 분	임용계급	자 격 증	가산비율
행정직군 및 보건직렬	9급	행정직(일반행정) : 변호사, 변리사 보건직(보 건) : 임상심리사1급, 임상심리사2급	5%
기술직군	9급	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	5%
		기능사	3%

※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첨1 「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」 참조

○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(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, 자격증 가산점)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필기시험일 해당자격증의 원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고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도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(10% 또는 5%)과 보호번호 입력
- 자격증 종류(가산비율) 및 번호(보호번호)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합니다.

9 응시자 주의사항

1.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.
2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또는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3.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, 자격미비,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.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웅진군 자치행정과(행정팀 ☎032-899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